

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 기획단 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내무위원회

1993. 2. 4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2월 3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2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86회 임시회

· 제2차 내무위원회 (1993. 2. 4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추진 기구 및 인력이 내무부 지기 12200 - 44 ('93. 2. 3)호로 승인되어
-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업소의 설치목적, 위치, 업무 또는 단장보직명칭과 공무원 정원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업소 명칭 :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
- 위 치 : 충북도청내 설치

- 업무 :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, 단지조성
분양관리 등
- 단 장 : 지방부이사관
- 공무원정원 :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
- 설치 기한 : '94. 12. 31까지 한시적 설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임 홍 식)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를 검토한 바,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 기구 및 인력이 내무부지기 12200 - 44 ('93. 2. 3)호로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주요 내용으로는

- 기획단 설치 목적 및 위치
- 단장 보직 명칭 및 공무원 정원 규정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, 단지조성, 분양관리 등의 업무 처리 내용등을 규정한 것으로서
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제5조 (공무원)의 조문중 공무원을 을 공무원 21명을 으로 "21명" 문안 추가
7. 심사결과 : 수정동의안 8인중 8인 찬성으로 제5조 (공무원)의 조문중 공무원을 을 공무원 21명을 으로 수정, 삽입하고 도 원안대로 의결
8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
 - 조문 대비표
 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"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"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기획단은 충청북도청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
2. 유치기업 선정, 협약, 시설지도, 지원
3. 각종사업추진협의기구 조직운영
4. 토지거래 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
5. 토지감정, 보상및 주만이주 종합대책 수립집행
6. 단지조성사업 추진및 지구내 공사설계.시공 지도감독
7.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
8. 단지분양 공급 및 용지관리대책
9. 단지내 공공시설및 부대시설 시공관리
10. 도시시설의 기본협의서 작성운영
11. 각종대형사업의 홍보및 연구개발성과 관리
12. 기타 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(단장) ①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.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의에 필요한 공무원21명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3. 2. 4

제안자 : 이병두 의원외 7인

1. 수정이유
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등 사업소 설치시 공무원 청수를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

2. 수정 주요 골자

공무원을 → 공무원 21명을 (안 제5조)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"공무원을" 을 "공무원 21명을" 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 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<u>공무원을</u>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5조 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<u>공무원21명</u>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